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자성산화철입자의
일본 제조업자 및
동 사 임원 3명,
가격카르텔 공모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필라델피아 연방대 법원이 금일,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MIO입자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고객을 할당하는 공모를 행한 자성산화철입자(magnetic iron oxide: 이하 MIO라 한다)의 일본제조업자와 동 사 임원 3명을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MIO입자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의 제조에 있어 폴리에스테르 필름 표면을 덮는데 사용되는 분말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모기간 중 미국에 있어서 MIO입자의 판매액은 2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소재하는 석원산업(ISK)과 동 사 임원3명 - 위반행위 실행기간 중, 동 사 사장이었던 Takashi Akizawa와 동 사 전무이사 및 미국 자회사인 ISK Magnetics

Inc(전에는 펜실바니아주 Bethlehem에 소재)사장인 Atuso Kinoshita, General Manager 대리인 Yoshiaki Tsujimura가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MIO입자의 판매에 관하여 가격카르텔과 고객 할당을 하는 공모를 하고 실행하였다.

- MIO입자의 가격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회합을 하였다
- 특정수준에서 가격설정을 할 것에 합의하였다.
- 공모업자간에 고객을 할당할 것에 합의하였다.
- 합의한 가격을 실행하였다.
- 협정에 따라 가격을 공표하고 견적을 행하였다.

1999년 5월, ISK Magnetics의 전 회장인 William L Girvin은 MIO입자에 대한 가격카르텔과 고객을 할당하는 공모에의 참가에 관하여 유죄 답변을 하였다.

ISK 및 동 사 임원 수명은 법인에 대하여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 대하여 3년의 금고형 및 35만 달러의 벌금을 정한 서면법 제1조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벌금의 최고액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2배액 중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의 최고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액까지 인상된다.

MIO입자 사건의 수사는 독점금지국 뉴욕사무소와 FBI의 뉴저지 사무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2001. 7. 25.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3명의 일본기업 임원,
가격카르텔 공모로 기소
Ibiden주식회사, 360만
달러의 벌금 부과에 동의**

미국 법무부는 Ibiden주식회사의 임원 3명이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가격에 대한 국제카르텔에 참가하였다하여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기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덧붙여 등방성흑연 일본 제조업자인 Ibiden사는 동일 공모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고 36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하였다.

등방성흑연은 내열·내약품성이 뛰어난 미립자의 탄소제품이다. 이것은 다른 제품 중에서도 특히 방전가공용 전극, 금속의 연속가공을 위한 금형 및 그 독특한 특성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

소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Ibiden(주) 회장 Masaru Endo, Ibiden(주) 세라믹사업부의 general manager Shigeo Yasuda 및 Ibiden(주) 세라믹사업부 국제판매담당책임자 Akira Hashimoto가 익명의 기업 및 개인적 공모자들과 함께 1993년 7월부터 적어도 1998년 2월까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된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하고 배제하는 공모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3명의 임원은 모두 일본 국민이다.

동시에 일본 Ogaki시에 소재하는 Ibiden에 대하여 등방성흑연의 가격 카르텔공모에 참가했다 하여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개별 기소되었다. 동 법원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하는 합의의 일부로서 Ibiden사는 등방성흑연의 개별피고에 대한 기소에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Ibiden사는 Carbone of America Industries Corp(CAIC) 및 Toyo Tanso USA Inc.에 이어 등방성흑연의 공모에 참가한 것으로 소추된 3번째 회사이다. 2명의 임원 - CAIC 최고경영책임자 Michel Coniglio 및 Toyo Tanso USA의 일본 모회사의 임원인 Takeshi Takagi도 또한 가격 카르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360만 달러의 벌금이 Ibiden에 부과되고 이 사건에 대해 부과된 벌금총액은 1,500만 달러 이상이 된다.

정식기소장 및 약식기소장에 따르면 피고 및 공모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카르텔공모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다.

-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된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가격과 등급(grade)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회담에 참가하였다.
- 가격을 협정하고 동 수준까지 가격을 인상, 유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 판매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 공모자의 고객에게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에 관하여 협정된 가격으로부터 할인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 비기계가공 및 반기계가공 등방성흑연의 등급을 표준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 협정사항을 감시하고, 준수시키기 위하여 판매 및 고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협정에 따라 가격을 공표하고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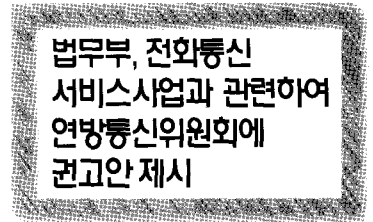
「금일의 제소는 미국산업계 및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관계한 이러한 기업 및 개인을 탐지하고, 기소하는 독점금지국의 결의를 한층 더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Charles A. James 독점금지국 국장은 언급했다.

Ibiden 및 3명의 개인은 법인에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 개인에게 최고 3년간의 금고형과 35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 서면법 제1조에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금일의 기소는 독점금지국 필라델피아 사무소 및 필라델피아 연방수사국

에 의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이다.

2001. 7. 25.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연방법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심사중인 SBC사와 관련업체들의 Arkansas 및 Missouri주에 대한 단거리 전화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신청 건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방법무부는 SBC사의 전화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Arkansas와 Missouri주의 지역전화통신시장 개방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지만, 현재 제출된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10월 3일 연방통신위원회에 권고키로 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유로, 연방법무부는 SBC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Arkansas와 Missouri주에 대한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현재의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가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경쟁관련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느 때든지 절차를 종료하고 SBC와 관련기업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들 통신시장진출을 위한 신청에 대해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법무부는 1996년 연방통신법 제271조에 따라 SBC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Arkansas와 Missouri주에 대한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쟁영향력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연방법무부는 경쟁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 2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연방통신위원회는 SBC가 Missouri주에서 자사 네트워크의 기본시설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들이 장래에도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할 것이라고 연방법무부는 지적했다. 둘째, 현재 제출된 기록들만으로는 SBC가 Arkansas와 Missouri주에서 활동하는 경쟁자들에게 자사의 기본 네트워크 시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유지와 정비체계에 수반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SBC가 Arkansas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쟁제한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Arkansas에서 SBC의 경쟁사업자들이 시간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강제이행 조항과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법무부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SBC를 비롯한 관련기업들은 Texas, Kansas, Oklahoma 지역에서 전화통신서비스 신청을 이미 허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쟁법상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연방법무부 법무보좌관을 맡고 있는 Charles A. James는 말하고 있다.

SBC는 이미 2001년 4월에 Missouri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연방법무부는 SBC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요소들에 대한 가격의 반경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7일 SBC는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2001년 8월 20일 SBC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설비들에 대한 요금을 인하한 후 현재의 신청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AT&T의 분할이래, 전체 Bell system의 개별분할 회사들인 독립적인 Bell Operating Companies (BOCs)들은 당시 분할명령의 일부로서, 또한 1996년의 연방통신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규정들에 의해, 그들 각각의 개별 지역 내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 따라서 연방통신법 제271조에 의해 SBC와 같은 Bell Operating Company(BOC)는 개별 주들의 장거리통신시장을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했음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지역 내에서 장거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주(州) 안에서 BOC의 장거리 통신서비스 제공권에 대한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방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연방법무부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실

질적인 비중을 두고 고려하게 된다.

SBC는 연방통신위원회에 2001년 8월 20일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방통신법의 관련 규정 에 따라 그 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인 여부를 9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

1934년 제정된 연방통신법은 1996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새로 탄생되었는데, 구 연방통신법은 통신 분야의 시장진입과 경쟁정책에 대한 모든 판단권한을 연방통신위원회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연방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였고, 장거리 전화통신 시장에 대한 BOCs의 진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통신서비스업자 역시 각 주 내의 지역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6년의 개정 연방통신법에 의해 기존 BOCs는 관련 통신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장거리 통신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개정법은 연방통신법에 규정되어 있던 독점금지법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경쟁당국이 통신시장의 경쟁정책에 관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2001. 9. 24. 미 법무부 발표

**법무부,
Computer Associates
의 합병전 위법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소**

연방법무부는 9월 24일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와 Platinum technology International inc.사에 대해 민사상의 과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합병전 대기기간 요건과 가격고정을 금지한 독점금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병전 법정대기기간 동안 Platinum이 고객들에 대하여 가격 할인과 판매조건들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gun jumping"으로 알려진 이러한 행위들은 서면법 제1조뿐만 아니라 1976년의 Hart-Scott-Rodino(HSR)법에 따라 만들어진 합병전 심사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연방법무부의 기소장은 Computer Associates와 Platinum에게 각각 638,000달러, 총 1,276,000달러의 민사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omputer Associates가 장래에 이와 유사한 합의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1999년 3월 29일 Computer Associates는 Platinum에게 35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제공하는 합병청구 사실을 발표하였고, 양 회사는 이후 HSR법에 따른 합병전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합병발표 전에 Computer Associates와

Platinum은 수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 합병에 대한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Computer Associates가 Platinum에 대해 강도의 영업행위 제한조건을 부과하고, HSR의 대기기간 동안 특정 경쟁적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Platinum은 자신의 고객에게 20% 이상의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수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Computer Associates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HSR법에 의한 대기기간 동안 Computer Associates는 고객과의 계약을 감독하고 승인하며, Platinum의 경영과 관련된 다른 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해 Platinum의 사업 본부에 그들의 임원을 파견하였다.

"Computer Associates는 연방법무부가 기업인수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요구되는 대기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Platinum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HSR법을 위반하였다"고 연방독점금지국의 책임자인 Charles A. James는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다. 합병당사자들은 HSR법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HSR법의 대기기간 동안 그들의 기업들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경쟁자들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HSR법은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인수나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합병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HSR법은 합병당사자들이 합병을 위한 합의를 한 후 법정대기

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기기간의 목적은 경쟁당국에 제출된 합병계획에 대해 심사하고 합병당사자들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만일 경쟁당국이 그 당사자들간의 거래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경쟁당국은 대기기간의 만료 전에 조치를 행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HSR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하루당 11,000달러의 민사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Computer Associates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1년 총 회계수입은 4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Platinum은 인수되기 전 Oakbrook Terrace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1998년 회계수입이 9억 6천 8백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Computer Associates의 Platinum 인수는 연방법무부에 의해 1999년에도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Computer Associates가 6개의 주요 경영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는 Platinum 상품들과 관련 자산들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몇몇 기업이 합병계약에 상호간의 경쟁제한조항을 규정함으로써 HSR법의 대기기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당국은 앞으로도 HSR법의 합병전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합병합의 신고 이전 혹은 이후의 경쟁제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01. 9. 28. 미 법무부 발표

**연방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고 청구를 심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위반사건에서 MS사의 상고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10. 5. 심의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법관회의는 10월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이외 다른 청구인들의 수 많은 법적 재검토 청구들을 토론하기 위해 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MS사의 상고는 본래 지난달에 연방대법원의 비공개 심리 대상이었다. 어쨌든 금요일 심의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재검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법률자문회사의 독점금지법 전문가인 Jim Kobak은 “만일 그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사안을 결정하는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히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대법관들이 금요일에 투표를 한다면 그 투표의 결과는 빠르면 월요일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회합한 후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MS사는 지난 8월 7일 연방대법원

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 상고장에서 이 회사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의 일부분을 인정한 6월 28일의 항소법원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했다. 연방지방법원은 MS사가 데스크탑 컴퓨터의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였고, 항소법원도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

MS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회사에 대한 판결을 내린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인 Thomas Penfield Jackson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뉴스리포터에게 미리 그 사건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Jackson이 이 사건에서 완전히 제척되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미국 컬럼비아 특별지구 항소법원의 재판에서는 Jackson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와 New Yorker magazine의 리포터와 대담을 가짐으로써 법관윤리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동일한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MS사가 자신의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그의 독점력을 사용하였다고 판결한 지방법원의 결정 대부분을 승인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MS사는 Jackson판사가 1999년 9월 그가 처음 공식적인 발언을 했을 당시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가 사건 판결 재판부에서 배제되었어야 했으며, 그 효과로서 그 날 이후 Jackson판사가 행한 모든 판결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인 연방법무부와 18개 주정부들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MS사의 청구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사에 착수한 이후,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MS사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Fenwick & West 법률자문회사 변호사이자 연방법무부의 독점금지담당 변호사였던 Dana Hayter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맡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사건들이 하급법원에서 아직 계속 진행중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Kobak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연방대법원이 MS사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는 “MS사의 독점금지위반사건을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법관의 윤리문제가 논점이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기본적인 반독점 문제들이 상고장에 제출되어 있지 않고,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Kobak은 또한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맡는 것은 항소법원 법관의 전원 일치로 판결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대법원에서 재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근거가 확실하고 강력한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경우일수록 더 높아지는데, 이 사건의 항소법원 판결에는 그와 같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심을 위한 법관으로 지

E U

유럽위원회, 카르텔심사에 있어서 새로운 Leniency 고시 원안에 대해 검토 시작

정된 Colleen Kollar-Kotelly는 MS사에 대한 구제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된 이 사건의 다음 진행과정을 맡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Colleen Kollar-Kotelly판사는 양 당사자들이 금요일에 집중심리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그 사건에 대한 빠른 법적 분쟁 종식을 촉구한 바 있다.

MS사와 주 및 연방정부는 10월 12일까지 자신들의 해결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법원은 명령했었다. 만일 양 당사자가 그 시점까지 최종결론을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자가 사건을 맡게 될 것이다. 만일 당사자들이 11월 2일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2002년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에 대한 일정을 다시 정할 것이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당사자들과 자문위원들이 이 사건을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의 명령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만일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하급법원의 절차를 중지시키도록 명령할 것이다" 라고 Hayter변호사는 말했다.

2001. 10. 3. IDG news

유럽위원회는 가격카르텔 및 기타 카르텔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고시원안을 채택하였다. 카르텔행위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명백한 손해를 초래하며 가장 유해한 독점금지법 위반이다. 1996년의 이른바 Leniency 고시에 대체할 고시원안은 미인지의 카르텔에 관하여 곧바로 심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자진하여 제공한 최초의 기업에게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는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 및 선택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쟁제한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원재료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유럽산업계에 해를 주었다. 비밀리에 행해진 카르텔은 장기적으로 보아 경쟁력의 저하 및 고용기회의 감소와도 관련된다. 이 때문에 hard-core 카르텔(경성카르텔)의 인지 및 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유럽위원회의 경쟁정책에 있어 가장 높은 우선 사항의 하나이다.

경성카르텔과 대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는 카르텔에 의한 이익, 그리고 고액인 과징금의 위험이 커질수록

은밀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이다. 이러한 카르텔을 감추기 위한 기업의 수단도 더욱 정교해 진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당국이 사용하는 수단의 하나가 효과적인 leniency program이다. leniency는 카르텔의 적발에 협력한 당사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거나(과징금의 면제) 감액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leniency고시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카르텔을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있어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채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기업에게 이러한 공모를 고발토록 하는 보다 큰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이 고시원안은 가격카르텔 및 기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투쟁에 있어 어떻게든 보다 관대한 해결방법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카르텔이 적발되고 위원회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처음 공모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단념시키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현행의 leniency고시는 1996년에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당시 5년후에 개정이 필요하지 아닌지 재검토하는데 합의하였었다.

현재까지 얻은 경험에 의해서도 과징금의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의 투명성 및 확실성을 높임으로써 고시의 유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되었다. 또한 과징금의 감액의 정도와 기업에 의한 위반의 입증에 대한 공헌도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도 유효

할 것이다.

■ 개정원안의 주요점

- 미탐지된 카르텔(undetected cartel)에 대하여 위원회에 최초로 정보를 제공해 준 기업에게는 과징금의 전액면제가 허용된다. 면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은 위원회가 불시검사(이른바 “여명의 기습 dawn-raid”)를 실시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미탐지의 카르텔에 대해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기업에게 최대의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다. 면제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고시에 정해진 조건이 인정되면 면제가 허용된다는 뜻을 확인하는 서면을 위원회로부터 신속하게 받게 된다.

- 과징금 감액에 관한 방법은 면제신청자 및 검사에 이어 「부가가치적인」 증거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위원회가 적절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개정원안에서는 감액정도는 증거가 제출된 시기 및 제공된 증거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복수의 감액폭이 감액 수익자의 각 범주에 대해 제공되고 있다.

leniency의 조건을 충족한 최초의 기업은 부과된 과징금의 30%~50%, 두 번째 제공자는 20%~30%, 이후의 제공자는 2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을 감액 받은 자는 또한,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는 감액폭을 나타낸 서면을 제공받는다. 이 서면은 이 의고지서가 발부된 날까지 발부된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총체적인 투명성 및 신용성을 높이게 된다.

■ 배경

leniency고시가 채택된 이래 20건 이상의 카르텔사건에 있어서 기업들은 위원회 심사에 협력하였다. 2000년에 있어서도 Archer Daniels Midland와 3개사에 대하여 총 1억 1,0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 라이신 카르텔을 포함하여 다수의 결정들이 행해졌다.

위원회는 1998년 중반 이후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금지된 카르텔 및 지배적지위의 남용사건에 있어 총 10억 유로 이상(10억 8,103.9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이전 3년간에는 1억 6,259만 유로였다.

유럽위원회만이 카르텔사건에 있어서 leniency rule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경쟁당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에 있어 주요한 무기로 생각하는 leniency에 관한 규칙을 발전시켰다. EU의 새로운 leniency rule안은 카르텔 적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벌금 0 달러」를 허용하는 미국 독점금지법과 유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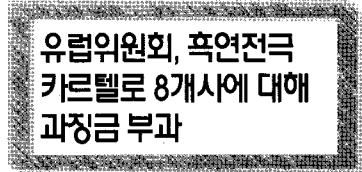
■ 고시원안에 대한 의견 모집

카르텔사건에 있어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개정고시원안은 EC 관보에 게재되고, 또한 인터넷상의 주소(<http://europa.eu.int/comm/competition/antitrust/leniency>)에서 입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2001년 9월 21일까지 개정고시원안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을 모집한다. 새로운 고시의 최종판은 금년 말까지 채택된다.

2001. 7. 18.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는 독일, 독일의 SLG Carbon AG, 미국의 UCAR International과 그 외 6개사에 대하여,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철에 사용되는 세라믹에 의해 주도된 흑연주인 흑연전극시장에서 가격유지 및 시장분할을 하였다 하여 총 2억 1,8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전세계의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제조업자 8개사가 서로 경쟁을 한 경우보다도 현저히 높은 가격을 가져오게 한 비밀카르텔을 90년대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철저한 심사의 결과이다.

유럽위원회는 1997년에 개시한 심사의 결과로서, SLG Carbon AG(독일), UCAR International Inc(미국), Tokai Carbon Co. Ltd(일본), Showa Denko(일본), VAW Aluminium AG(독일), SEC Corporation(일본), Nippon Carbon Co. Ltd(일본), Carbide Graphite Group Inc(미국)가 1992년부터 1998년에 걸쳐 흑연전극의 가격을 구속하고, 시장을 분할하는 세계

적인 카르텔에 관계한 것을 입증하였
다.

흑연전극은 「mini-mills」로 불리우
는데, 주로 아크 전기로에 있어서 스크
램의 새로운 제철로의 재이용에 사용
되는 흑연의 세라믹 주조로서 원주상
태의 것을 말한다. 전기아크 공정은 유
럽연합에서 제철량의 약 35%를 점하
고 있다. 관련시장은 15개국의 EU회
원국에 노르웨이를 추가한 유럽경제지
역에서 1998년까지 4억 2,000만 유
로에 이른다.

당해 카르텔은 모두 합하여 유럽의
전 수요의 2/3 이상을 공급하는 SLG
와 UCAR의 선동에 의해 1992년에
시작하여, 미국, 캐나다 및 EU의 경쟁
당국이 심사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1998년까지 계속하였다.

관련사업자는 통상, 「주요한 제조업
자」 또는 시장 지배자가 야기하고 이후
세계의 타지역에서 발생한 가격인상을
합의하기 위하여 사장급(「Top guy」
미팅으로 칭한다)을 포함한 정기적인
회합을 행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카르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게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수 개의 관련사업자가 스
위스에서 행한 비밀 회합 및 위법한 협
정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관련사업자는 비용청구에 있어 이러
한 회합의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
도록 현금으로 호텔비와 교통비를 지
불하여 회합의 존재를 숨기고, 회합 및
협정 관련 서면에 의한 어떠한 증거도
유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문서가 존재하는 경

우에 SGL을 「BMW」, UCAR을
「Pinot」, 일본기업을「Cold」라고 하여
카르텔 참가자에 대하여 암호명(code
name)을 사용하므로써 독점금지법에
위반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카르텔 실행기간 중 흑연전극의 가
격은 50% 상승하였다. 합의한 가격의
인상은 관련사업자가 독점금지법 위반
에 대한 심사를 의식했기 때문에 점차
정기적이지는 못했다.

유럽위원회는 관련사업자의 행위를
EC경쟁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
고 EC조약 제81조 및 EEA협정 제53
조에 따라 총 2억 1,880만 유로의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개별사의 과징금액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단위: 100만 유로)

- SLG Carbon : 80.2
- UCAR International : 50.4
- Tokai Carbon : 24.5
- Showa Denko : 17.4
- VAW Aluminium : 11.6
- SEC : 12.2
- Nippon Carbon : 12.2
- Carbide Graphite : 10.3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본 건의 결정은 유럽위원회가 하드코
어 카르텔(경성카르텔)에 대한 법의
최대한의 효과를 적용하겠다는 새로운
신호이다. 본 건에서 부과된 고액의 과
징금은 위반에 대한 현저한 중대성을
고려하여 시인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
을 단념시키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Showa Denko에 대한
과징금의 실질적인 감액 및 기타 수 개
사에 대한 상당한 감액을 허용함으로

써 가장 중대한 경쟁법 위반인 카르텔
적발에 관련한 기업의 협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과징금의 산정

유럽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중
대성, 실행기간 및 과징금 산정상의 가
산 / 경감사정의 존재유무를 고려하였
다. 또한 관계사업자의 관련시장에 있
어서의 점유율 및 총체적인 규모도 염
두에 두었다. 과징금의 산정은 관계사
업자의 총 매출액에 관해서 행해진 것
은 아니며, 오히려 위원회의 1998년
과징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해진 것
이지만, 최고액은 당해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였다.

SLG 및 UCAR은 당해 카르텔의
추진주체다. 양사는 1991년에 접촉을
개시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전체계획
을 발전시켜 1992년 5월에는 최초의
「Top guy」회합을 갖고 기타의 제조
업자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때문에 양사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카르텔참가자의 대부분은 장기(5년
이상)에 걸쳐 위반행위를 행하였다. 여
러 회사에 대하여 몇 가지의 가산요인
이 고려되었다(주동자의 역할, 위원회
의 심사개시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
된 것 및 위원회의 심사를 방해하려고
기도한 것).

유럽위원회에 의한 본 건 심사는
「기습」심사를 행한 1997년 6월에 시
작되었다. Showa Denko는 1998
년초에 leniency고시의 조건에 따라

위원회에 협력하였다. 본 건은 위원회가 leniency고시의 조건에 따라 과징금의 실질적인 감액(70%)을 허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Showa Denko는 위원회의 심사에 협력하고 카르텔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최초의 기업으로 감액의 이익을 받았다. UCAR도 또한 심사의 초기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사에 협력하였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동 사에 40%의 감액을 허용하였다.

미국에 있어서도 당해 카르텔의 주요한 당사자가 유죄의 답변을 행한 UCAR이 1억 1,000만 달러, SGL이 1억 3,500만 달러 등 고액의 벌금을 지불하였다. 미국의 최대 제조업자인 UCAR사의 2명의 전 임원은 수 개월 간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 카르텔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10건) : 사건당 총액

년	사건명	총액(백만 유로)
1998	TACA	272.940
1999	Seamless동관	99.000
2001	흑연전극	218.8
1998	단열파이프	92.210
1994	판지(Carton) *	139.280
1994	Poutrelles *	79.549
1994	시멘트 *	113.377
1986	폴리프로필렌 *	54.613
2000	아미노산	109.990
1998	영국설탕 *	48.800

*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감액된 과징금

2001. 7. 18. 유럽위원회 발표

일 본

독점금지연구회, 절차규정의 정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일반집중규제와 절차규정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독점금지법연구회 절차관계 등 부서모임'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절차에 대한 검토내용을 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제73호 '해외경쟁정책동향-일본 편-참조).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 절차에 대한 검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 제도의 개요

(1) 과징금제도

과징금제도는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국가가 징수함으로써, 위반행위자가 그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억제를 도모하고 카르텔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이다.

(2) 과징금 납부명령

가격카르텔이나 입찰담합 등이 행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자(위반행위자가 사업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실행기간 중의 대상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액수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도록 되

어 있다(일본 독금법 7조의2 1항, 8조의3).

(3)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심판절차 등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48조의2 5항). 이 청구에 의하여 심판이 개시된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은 효력을 잃는다(49조 3항). 심판절차를 거친 후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결에 의하여 다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 된다(54조의2 2항).

2. 과징금 대상행위의 범위

(1) 문제점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대가에 관계되는 것 및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량을 제한하여 그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가격카르텔 등'이라 함)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격카르텔 등과 같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요건으로 하는 사적독점이나 구입카르텔(대가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에 의하여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과 같은 위반행위는 과징금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가격카르텔 등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

로, 이러한 위반행위를 과징금의 부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20여년에 걸친 과징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제한 등이 행해지면서 유형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은 구입카르텔뿐이었으므로, 위반행위자의 대상상품에 대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구입카르텔에 관하여 검토한다.

(2) 검토내용

(가) 사적독점

가) 현행 과징금제도의 범위(대가와 의 관련성)

현행 과징금제도는 모든 부당한 거래제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와 관련되는 경우(가격카르텔)와 실질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공급량제한 카르텔)로 한정되고 있다. 이는 가격카르텔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과징금제도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공급량제한 카르텔에서는 공급량제한이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격에 용이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 그 행위자체가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한 그 효과가 가장 명백하며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영향이 크다는 점
 - ㉡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가격을 매우 쉽게 또한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
 - ㉢ 경제적 효과의 발생이 구체적이라는 것 등의 이유로 인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주류를 차지한다는 점
- 사적독점의 요건인 지배·배제행위

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가와 관계되는 것인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고, 소비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가격을 직접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징수해야 할 경제적 이득을 산정하기 쉽다. 따라서 사적독점을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적독점 중에서 대가에 관계되는 것을 과징금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사적독점에 대한 과징금제도

현행 과징금제도의 취지·성격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 사적독점 중 대가와 관계되는 것(실질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가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생긴 거래분야에서 관련상품·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 자가 위반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자에게는 과징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품·서비스의 매출이 없으므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제도에 구매받지 말고 새로운 과징금제도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생긴 거래분야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의 매상 이외의 것을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EU에 있어서의 과징금과 같이 위반행위자의 사업활동 전체에 의한 매출을 과징금액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

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채용한 것이 가능하다면,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사업 활동을 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도 사업활동 전체에 의한 매출 등을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 구입카르텔(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카르텔)

구입카르텔은 상품·서비스의 수요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고, 위반행위자는 대상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직접적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익을 증가·유지시키려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반행위자는, 가격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구입카르텔에 의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과징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입카르텔에 있어서 과징금액의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구입카르텔은 가격카르텔과는 반대로 위반행위자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다 낮은 구입가격을 찾으려고 한다. 이와 같은 구입카르텔의 성격상 구입한 상품·서비스의 가격이 낮을수록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은 커진다. 따라서 위반행위자의 구입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로 구입가격이 적은 만큼 경제적 이득은 크지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액은 반대로 적어진다. 또한 구입액 이외에 과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적당히 기준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구입카르텔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적독점을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과징금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3) 앞으로의 방향

위반행위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국가가 징수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을 확보함과 아울러, 위반행위의 억제를 도모하고, 위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인 현행 과징금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보면, 사적독점이나 구입카르텔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 신규참가가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사적 독점의 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생긴 거래분야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의 매출에 일정비율을 공급하는 현행의 과징금액의 산정방식을 전제로 한다면, 사적독점분야에서는 과징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행위자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구입카르텔의 경우에는 매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대상행위의 범위를 재평가하면서 현행 과징금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심판절차의 개시에 의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독점금지법 제49조제3항은 심판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이 실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과징금 상당액의 현실적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거나, 현금납부비용의 부담을 면하고, 또는 과징금 상당액의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심판절차의 개시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한다.

(2) 검토내용

독점금지법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수법적 절차인 심판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기본법으로서의 독점금지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행정청과 같이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와 비슷한 사전절차를 구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처분의 공정과 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 모든 사안을 심판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에 의한 신속한 법운영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심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고심결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이라고 하는 일종의 간이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간이절차인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심판절차로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와 그 밖의 사항들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 후 다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심결이 행해지는 것이므로, 간이절차에서 행해진 당초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심판절차가 개시되어도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과징금 납부명령은 행정처분이라는 점(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과징금 납부명령은 금전과 관계된 처분이므로, 설령 당초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적인 반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③ 과징금 납부명령에 앞서서 의견 등의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나 다른 한편, 간이한 절차라고 평가되고 있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심결과 동일한 행정처분으로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3) 앞으로의 방향

과징금 납부명령은 배제조치절차에 있어서 권고와 다르고,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라는 점, 사후적인 반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보상이 된다는 점, 또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앞서서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심판절차가 개시되어도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이 실효되지 않고 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01. 8. 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